

<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(제4조제4항제1호 관련) >

- **교육 기관** :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, 행정기관(인사혁신처, 국가데이터처), 국내외 위탁교육을 주관하는 기관(전산전문 교육 포함)
- **교육 방법** : 교육기관 집합교육, 사이버교육, 직장교육, 원격교육 등
- **대상 교육훈련**
 -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, 전문교육과정
 - 시행령 제30조, 시행령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
 -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장교육 (인문소양 등은 제외)
- **대상 분야**
 - **공직가치 및 국정철학·주요 국정과제** (국가관, 공직관, 윤리관, 국정철학 및 국정기조,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전략, 시책교육, 공직자의 의무, 복무 등)
 - **직무역량 향상** (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포함한 공무원교육기관 교육과정)
 - ① 리더십, 의사소통, 갈등관리 등 **리더십역량**
 - ② 인사, 조직, 예산, 법제, 계약, 홍보, 감사, 보안 등 **공통 직무역량**
 - **특수직무역량 향상** (전산, 자료처리 등)
 - ※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사 연계 교육훈련계획(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-543, 2016.2.3.시행)에 포함된 과정 등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
- **인정 요건**
 -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은 과정별 수료기준에 적합한 경우
 - 행정기관(인사혁신처, 국가데이터처) 직장교육 등은 참석자 명부에 따라 인정
- **장기 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**
 - 대상 : 기본교육, 국외훈련, 국내 학위 과정 등
 - 제한 : 이수 연도 기관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제한(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)
 - *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,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 가능